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373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6.

발 의 자: 권명호·서범수·윤두현

최승재 · 엄태영 · 윤창현

정운천 · 김기현 · 정점식

서일준 · 이채익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, 시행령에서 지정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, 한 번만 연장이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지정기간의 제한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산업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그 지정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, 이러한 경우 지역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,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

것임(안 제17조제3항ㆍ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까지에서"를 "제5항까지에서"로, "절차 및 지정 기간, 지원의"를 "절차, 지원의"로 한다.

- ③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은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정한다.
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	제17조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
지정) ①・② (생 략)	지정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
	정 기간은 최대 2년의 범위에
	<u>서 정한다.</u>
<u><신 설></u>	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
	위기대응특별지역의 위기가 해
	소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
	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연장
	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
	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
	한다.
③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	<u>⑥</u> <u>제5항까지에서</u>
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	
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,	
지정 절차 및 지정 기간, 지원	<u>절차, 지원의</u>
의 종류 및 내용 등에 필요한	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<u>.</u>